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신림~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(2공구)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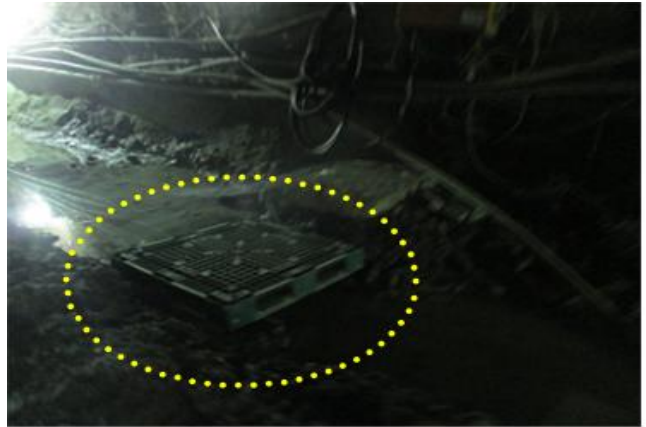
□ 점검일시 : 2020.03.17 (화)

□ 점검결과

◆ 점검자 : 최영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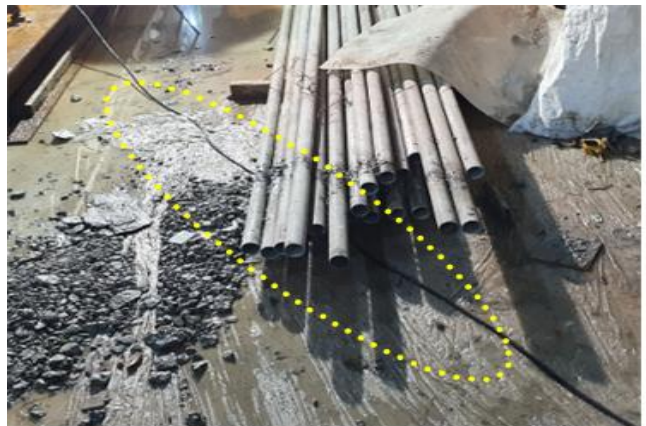
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

- 집수터널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분전반 구간은 작업자가 분전반 접근시 불안정한 상태의 팔레트를 사용하게 되어 있으니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안을 실시하기 바람.
 - 집수터널 공동구 가설통로 입구에 이동형 소화기가 불안정한 상태로 비치되어 있어 작업자 이동 등으로 인한 외력에 의해 하부로 전도될 우려가 있으니 안전하고 전도의 위험이 없는 곳으로 이동조치하여 관리하기 바람.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감전재해 예방(토목부)

- 집수터널 작업장에는 각종 가설전선이 습윤한 작업장 바닥에 설치되어 있어 전선피복이 훼손될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보안을 실시하여 관리하기 바람.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15조(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)



○ 전도재해 예방(토목부)

- 집수터널 작업장 콘크리트 타설 작업으로 인하여 집수정설치구간에 설치된 안전난간이 임시 해체되어 있으니 작업완료 후 작업자 전도 등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



○ 기타 안전관리(토목부)

- 집수터널 작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투광등은 유리볼 형식으로 조도확보에 유리함이 있으나 작업자 이동간에 눈부심, 화상, 전도 등의 안전 사고 우려가 있으니 기동성 및 안전성을 구비한 투광등으로 교체하여 관리하기 바람.



○ 기타 안전관리(토목부)

- 핸드폰통화가 불가하고, 작업구간이 분산되어 있는 현장여건상 작업자간 비상연락체계가 상시 구비되어야 하나, 일부 구간에서 작업자가 통신 수단 없이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.

